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규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증원하고, 기존에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4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202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제도 정비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신설조직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안전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4명”을 “6명”으로,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명”을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명,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명”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42조제3항의 “3명(7급 3명)”을 “2명(7급 2명)”으로 한다.

제42조제7항의 “3명(7급 3명)”을 “2명(7급 2명)”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7 중 총계 “593”을 “595”로 하고,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98”을 “199”로 하며,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2”를 “33”으로 한다.

별표 17의2를 삭제한다.

별표 18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05”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05”를 “307”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77”을 “83”으로 하고,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6”을 삭제하며,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0”을 “30”으로 하고,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방호서기 또는 공업서기 53” 다음에 “해양수산서기 2”를 신설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일반직 계 2.0”, “해양수산서기 2.0”을 삭제한다.

별표 18의2, 별표 18의3, 별표 18의4를 삭제한다.

별표 2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5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40”을 “42”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 다음에 “공업서기보 1”과 “방호서기보 1”을 각각 신설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0”, “일반직 계 2.0”, “공업서기보 1.0”, “방호서기보 1.0”을 삭제한다.

별표 2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268”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268”을 “1,27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48”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48”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1” 다음에 “행정서기보 2”를 신설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일반직 계 2.0”, “행정서기보 2.0”을 삭제한다.

별표 25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27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270”을 “1,272”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50”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환경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50”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1” 다음에 “행정서기보 2”를 신설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일반직 계 2.0”, “행정서기보 2.0”을 삭제한다.

별표 27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619”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612”를 “6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2”를 “614”로 하

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일반직 계 2.0”, “3급 또는 4급 이하 2.0”를 삭제한다.

별표 2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안전과”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3월 3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3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4년 7월 3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2명(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 및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	제4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6명 ----- ----- ----- ----- ----- ----- -----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명,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명 -----

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 략)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의2와 같으며, 별표 18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 략)

③ 어업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
별 정원은 별표 21의2와 같으
며, 별표 21의2의 정원 중 3명(7
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
용한다.

④ ~ ⑥ (생 략)

⑦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4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
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5와 같으
며, 별표 25의 정원 중 3명(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한다.

제4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
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
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

----- 2명(7
급 2명)-----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2명(7급
2명)-----
-----.

제43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
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
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
조의3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8 제2호, 별표 22 제2호, 별표 24 제2호, 별표 25 제2호 및 별표 27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령 제43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령 제43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2024년 7월 31일-----
-----.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7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7의2를 적용한다. ②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8의3을 적용한다. ③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8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8일까지는 별표 18의4를 적용한다.	<삭 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593	595	+2
	.		.	.	
	.		.	.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 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98	199	+1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환경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운전 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32	33	+1
	.		.	.	
	.		.	.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	<u>305</u>	<u><삭 제></u>	-305
일반직 계	<u>305</u>	<u>307</u>	+2
·	·	·	
·	·	·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 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u>77</u>	<u>83</u>	+6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 전산주사 또는 해양수산 연구사	<u>16</u>	<u><삭 제></u>	-16
·	·	·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 운전서기·방호서기 또 는 공업서기	<u>53</u>		
<u>해양수산서기</u>	<u><신 설></u>	<u>2</u>	+2
·	·	·	
·	·	·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 연구사	<u>20</u>	<u>30</u>	+10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2.0</u>	<u><삭 제></u>	-2.0
<u>일반직 계</u>	<u>2.0</u>	<u><삭 제></u>	-2.0
<u>해양수산서기</u>	<u>2.0</u>	<u><삭 제></u>	-2.0

[별표 22]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은 제외한다)</u>	<u>151</u>	<u><삭 제></u>	-151
•	•	•	
•	•	•	
일반직 계	<u>40</u>	<u>42</u>	+2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1		
<u>공업서기보</u>	<u><신 설></u>	<u>1</u>	+1
<u>방호서기보</u>	<u><신 설></u>	<u>1</u>	+1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2.0</u>	<u><삭 제></u>	-2.0
<u>일반직 계</u>	<u>2.0</u>	<u><삭 제></u>	-2.0
<u>공업서기보</u>	<u>1.0</u>	<u><삭 제></u>	-1.0
<u>방호서기보</u>	<u>1.0</u>	<u><삭 제></u>	-1.0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1,268</u>	<u><삭 제></u>	-1,268
일반직 계	<u>1,268</u>	<u>1,270</u>	+2
·	·	·	
·	·	·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u>			
<u>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u>			
<u>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u>			
<u>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u>	<u><신 설></u>	<u>348</u>	+348
<u>·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u>			
<u>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u>			
<u>는 학예연구사</u>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u>			
<u>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u>			
<u>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u>			
<u>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u>	<u>348</u>	<u><삭 제></u>	-348
<u>·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u>			
<u>보 또는 학예연구사</u>			
·	·	·	

사무운영서기보	11		
<u>행정서기보</u>	<u><신 설></u>	<u>2</u>	+2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2.0</u>	<u><삭 제></u>	-2.0
<u>일반직 계</u>	<u>2.0</u>	<u><삭 제></u>	-2.0
<u>행정서기보</u>	<u>2.0</u>	<u><삭 제></u>	-2.0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u>1,270</u>	<u><삭 제></u>	-1,270
일반직 계	<u>1,270</u>	<u>1,272</u>	+2
·	·	·	
·	·	·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u>			
<u>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u>			
<u>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u>			
<u>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u>	<u><신 설></u>	<u>350</u>	+350
<u>·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u>			
<u>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u>			
<u>는 학예연구사</u>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u>			
<u>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u>			
<u>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u>			
<u>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u>	<u>350</u>	<u><삭 제></u>	-350
<u>·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u>			
<u>보 또는 학예연구사</u>			
·	·	·	

사무운영서기보	11		
<u>행정서기보</u>	<u><신 설></u>	<u>2</u>	+2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2.0</u>	<u><삭 제></u>	-2.0
<u>일반직 계</u>	<u>2.0</u>	<u><삭 제></u>	-2.0
<u>행정서기보</u>	<u>2.0</u>	<u><삭 제></u>	-2.0

[별표 27]

국립수산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u>	<u>619</u>	<u><삭 제></u>	-619
일반직 계	<u>612</u>	<u>621</u>	+9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12</u>	<u>614</u>	+2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u>	<u>2.0</u>	<u><삭 제></u>	-2.0
일반직 계	<u>2.0</u>	<u><삭 제></u>	-2.0
3급 또는 4급 이하	<u>2.0</u>	<u><삭 제></u>	-2.0